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3. 11. 17.  
경제도시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
- 발의자: 최홍린 의원 등 7명(김장관, 이선주, 고명옥, 서보영, 도하석, 임미연)
- 발의일자: 2023. 11. 3.
- 회부일자: 2023. 11. 3.
- 상정 및 의결: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(2023. 11. 17.)

### 2. 제안이유

-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, 임차인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구청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~ 안 제5조)
-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임차인 보호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 ~ 안 제7조)
- 상담관의 구성 및 운영 및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 ~ 안 제11조)
- 개인정보 수집 및 지도·감독,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함 (안 제12조 ~ 안 제15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및 제4조
  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
  -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7조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- 입법예고(2023. 11. 3. ~ 11. 13.): 의견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선량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임.
- 상위법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에는 임대차 관련 피해 예방과 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·시행, 임차인 보호사업, 상담관의 구성 및 운영,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, 지도·감독,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전세사기의 사전예방과 피해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계법령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